

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1 적용 지역

○ 14개 시·도*

- *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2 적용 대상 등

※ 본 조치보다 강화된 조치 또는 거리두기 단계 등 적용 지역은 해당 조치 계속 적용

① 11명(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포함)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
- (조치내용)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 **11명 이상**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**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**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활동 금지
- (금지대상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돌잔치, 회갑·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·행사
- (인원산정) '11명의 범위'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, 등 제외
<적용 예외>

※ 사적 모임 예외범위는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자율 조정 가능하다.

◆ 적용기간(10.18.~10.31.) 중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(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)까지 가능(11명 이상 불가)

◆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

- (사적 모임)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*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·모임·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
- 단, 집회의 경우,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

- (직계가족^{1~2} 단계시 적용) 2021.6.1.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**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산정에서 제외
- 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- *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

-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*이 모이는 경우
 - 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- 아동(만 12세 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-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②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10명까지 허용

③ 돌잔치는 최대 49명*까지 허용

* 16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가능

④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시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

* 단,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(예: 풋살 최대 15명) 초과 금지

② 사적 모임을 제외한 50명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·모임·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·장소

-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·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

- 단, 대규모 스포츠 대회에서 대회참가자 및 운영인력이 접종완료자 또는 PCR음성확인된 자*인 경우, 최소 인력 참가로 대회 개최 가능

* 경기 전 48시간 이내의 확인서만 유효

< 50명 이상 금지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 >

▲ (모임·행사) 결혼식, 장례식,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각종 (지역)축제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
※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공연은 각각 별첨 '기본방역수칙'의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공연장 수칙과 추가수칙을 적용

-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,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
-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,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,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·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·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*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·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

* (예) 기업 정기 주주총회, 예산·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, 방송제작·송출 등

④ 시험의 경우, 수험생 간 1.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(1~4단계)

③ 적용 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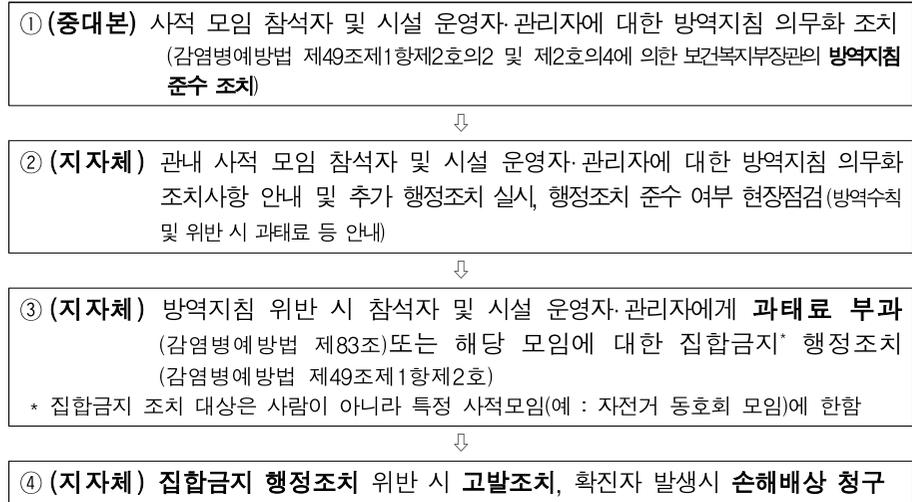
- 2021년 10월 18일(월) 0시 ~ 2021년 10월 31일(일) 24시

④ 법적 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 제2의4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<p>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p>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</p> <p>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</p>
<p>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</p> <p>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</p>

⑤ 추진내용 및 절차 : 사적 모임



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즉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며, 운영 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운영중단,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적용대상(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·운영자)의 준수사항

< 사적 모임 >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참석자 수칙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·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11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11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11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, 사적 모임인지 확인 ▶ 위 ①, ②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11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,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11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▶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1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								
<p>※ 적용기간(10.18.~10.31.) 중 접종미완료자 4명 포함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fff2cc;"> <th>사적모임 최대 10명(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) 가능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+완료자 0명 ⇒ 4명(O)</td> </tr> <tr> <td>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+완료자 6명 ⇒ 10명(O)</td> </tr> <tr> <td>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+완료자 7명 ⇒ 10명(O)</td> </tr> <tr> <td>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+완료자 8명 ⇒ 10명(O)</td> </tr> <tr> <td>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+완료자 9명 ⇒ 10명(O)</td> </tr> <tr> <td>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+완료자 5명 ⇒ 10명(X)</td> </tr> <tr> <td>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+완료자 6명 ⇒ 11명(X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사적모임 최대 10명(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) 가능	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+완료자 0명 ⇒ 4명(O)	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+완료자 6명 ⇒ 10명(O)	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+완료자 7명 ⇒ 10명(O)	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+완료자 8명 ⇒ 10명(O)	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+완료자 9명 ⇒ 10명(O)	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+완료자 5명 ⇒ 10명(X)	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+완료자 6명 ⇒ 11명(X)
사적모임 최대 10명(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) 가능									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+완료자 0명 ⇒ 4명(O)									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+완료자 6명 ⇒ 10명(O)									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+완료자 7명 ⇒ 10명(O)									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+완료자 8명 ⇒ 10명(O)									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+완료자 9명 ⇒ 10명(O)									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+완료자 5명 ⇒ 10명(X)									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+완료자 6명 ⇒ 11명(X)									

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 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→ 벌칙 부과 등 조치

①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,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.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② 해당 모임·행사에 대해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
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**현장점검** 실시

- 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기능함을 안내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·행사에 대해서는 **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**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**집합금지 행정조치** 실시
-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**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**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**

⑥ 추진내용 및 절차 :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·모임·행사

① (중대본) 집합·모임·행사장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)
↓
② (지자체)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확인 추가 행정조치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↓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주최자·종사자·참석자에 과태료 부과 (감염병예방법 제3조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))
↓
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

*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운영중단, 시설 폐쇄명령 가능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적용대상 집합·모임·행사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50명 미만의 행사 및 집회·시위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·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

< 50명 미만 행사 및 집회·시위 >

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관련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▶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실외 모임·행사는 제외 ▶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<p>※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p> <p>※ 집회·시위의 경우, 예방접종완료자도 인원 수 산정 시 포함(1~4단계 공통, 인센티브 적용x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) ▶ 마스크 착용 ▶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

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 → 시설 운영 중단·폐쇄명령 등 조치 → 벌칙 부과 등 조치

①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.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② 해당 모임·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 시 준수사항,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
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
- 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·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
-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